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③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2021년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시행일 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법 제2조 제2호)

-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령 제2조 별표1 제1호~13호)
-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령 제2조 별표1 제14호)
- 레지오넬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총 24가지 질병으로 규정
-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은 제외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 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노관 기능 손상, 급성 세노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이 중 주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기술사/건설기계기술사
중부재해예방(주) 전문위원

Special Contribution(1)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 · 크실렌 · 스티렌 · 시클로헥산 · 노말헥산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 · 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애, 자율신경계장애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약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 가죽, 그밖의 동물성 물체, 농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애, 갑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8가지 내용을 규정함.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같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기관에 위탁가능)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 · 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3.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로 규정함.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II.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대책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및 규제가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검토 결과,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안전보건전담부서를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반드시 추가로 이행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경영으로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